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연월일	2022. 3. .
제안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22. 3.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 1. 13. 字 시행)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불부합 규정 개정(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

구미시의회 조례 제 호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구미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를 “「구미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겸직(변경)신고서 (제5조 관련)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구미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 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 직 내 용	기관·단체명				
	직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의회의원 (인) 구미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제5조 관련)

구미시의회의원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한 글			비례대표
명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의회의원 (인) 구미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 (제7조 관련)

구미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 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구미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의회의원 (인)									
구미시의회의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징계 등) ① 시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 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검직하는 것이 「지방자치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검직사임 권고 거부	2. ----- 「지방자치 법」 제43조-----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